# 지역사회와 인권: 토론문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

오늘 '지역사회와 인권'관련 4분의 주제발표는 참으로 의미있는 내용이었음. 저희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 10.15자로 개소하였는데 이제 갓 2개월이 넘은 시점임. 오늘 발제내용은 앞으로 저희 사무소가 지자체와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점에서 4분께 감사드림.

오늘 저가 토론자로 여기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4분의 발표내용에 대해 지역인권제도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1. 인권조례제정 관련.

- 지역주민의 인권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모든 정책이 <u>단</u> <u>발성</u>이 아닌 <u>지속가능</u>해야 함. 즉, 인권의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인권 제도화의 시작점은 인권조례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인권위은 2012.4월 인권조례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권고를 하였음. 권고당시에 지자체의 약 72%(244개중 177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65개(광역14, 자치1, 기초50)로서 전체의 26% 정도에 불과함. 충청권의 경우 광역 및 자치시는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초지자체는 5곳(대전2, 충남3)에 불과하며 충북에는 한 곳도 없음.

#### 2. 인권증진기본계획

○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계획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앞으

로 펼쳐나갈 지역인권증진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매년 수립해 나갈 인권관련 업무계획, 예산, 자원배분 등의 기본 지침서로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u>지역인권상황실태조사-인권현안과</u> 제 도출-우선순위 설정-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인권단체·활동가,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과정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과정에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계획도 반드시 참고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임. 국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의 관계에서 때로는 각각으로, 때로는 상호 협력하에 인권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10곳을 채 넘지 않음(광역시: 서울, 부산, 광주/기초단체 서울 성북구 등 5곳).
  - 충청권을 살펴보면, 충남은 오늘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원 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아주 잘 수립하였던 데 타 지자체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음. 특히, 농업인, 어업인, 그리고 이주민 인권을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에 반영한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봄.
  - 대전의 경우 2015년도 예산에 5천6백만원 정도 계상되었으며, 충북에서도 1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으므로 다소 더딘감 은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세종시의 경우 지난 9월에야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임.

## 3. 인권교육관련

-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기본조례에 인권교육이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고, 민간에 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내년도에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 으로 있으며, 각종 인권교육프로그램도 지역사무소로 이관할 예 정이므로 인권교육분야에 대하여 대전지역사무소가 지자체와 협 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인권강사양성과정, 정신 보건시설종사자등 의무교육분야, 또는 충청권지역에 특수한 인권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많은 분야가 가능할 것으로 봄.

# 4.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

- <u>인권영향평가</u>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령(정책)을 입안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임. <u>인권지수</u>는 인권상황의 변화를 객관적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하지만, 실제 개발, 운영에서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도입이 되지 않고 있음. 인권위에서 권고한 조례표준안에는 이 두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충청권의 경우 충남 기초지자체에만 인권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광역 및 다른 기초지자체는 이두 제도가 모두 빠져있음.

○ 사실, 인권위도 아직 이 두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인권영 향평가의 경우 2003년도에 처음 도입을 시도(인권위법 개정)했으나 시기상조라고 하여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인권지수도 지난 3년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서 지표개발단계까지 와 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음. 이 두 제도는 제4기 증진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음.

### 5. 추진체계관련,

- 추진체계관련 해서는 문위원장님의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인권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임.
  - 다만,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에 대한 시민위원회 합의실패, 이와 관련 서울시의 입장 등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권담당자 1인을 두고 있거나 담당자 1인도 인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임. 다행 히, 충남의 경우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 인권제도화와 관련 서울과 함께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

## 6. 기업과 인권관련,

-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함.
- 주지하다시피, 이미 인권침해는 국가권력만이 아님. 기업의 인권침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기업의 인권침해,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다국적 인권침해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0년대부터 국제적 논의를 전개해

왔고, 지난 2011년도에는 유엔이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회원국 모두에게 배포하였음.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음.

- 충청권지역의 경우 천안, 아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만큼,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엇보다 인권경영을 통한 기업 인권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한 것임.
- 박진 활동가님이나 이상재 사무국장님의 발제내용에서도 언급되었 듯이 기업의 환경오염문제 등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지역사회의 인권현안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됨. 특히, 기업이 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인권에 대한 방향으로서 기업과 인권문제가 하나의 큰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줌.
- 이수철 책임원구원님께서 발제하신 충남 인권증진계획에도 물론 각 항목에 잘 녹아 있겠지만, '기업과 인권'항목을 별도로 독립해 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 최근, 대한항공 땅꽁사례에서도 기업의 인권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나고 있음.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제반 이미지,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브랜드 가치가 일시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됨. 일부 해외한인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하고 있음.
- 이와같이 기업의 인권문제가 기업브랜드 가치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의 좋은 사례임. 기업에서 인권을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